

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재형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797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7월 31일

발 의 자 : 김재형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강대호, 정재웅, 오현정, 김제리,
한기영, 신정호, 이경선, 김종무,
고병국, 최 선, 오한아 의원
(11명)

1. 제안이유

- 고시원 및 쪽방 거주가구는 대부분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, 특히 소방시설의 미비로 인해 화재에 취약한 상태임.
-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고시원을 대상으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나 조례상 시행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, 쪽방 거주민의 경우 여전히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음.
- 이에 고시원 및 쪽방 거주민을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및 예산집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여건을 보장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주거복지사업의 유형으로 고시원 및 쪽방 거주자를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사업을 신설함(안 제7조제10호 신설)

3. 기타사항

- 가. 관련 법령 : 「주택법」, 「건축법」, 「주거기본법」,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,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고시원 및 쪽방 거주자를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주거복지사업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 설〉</p> <p><u>10.</u> (생략)</p>	<p>제7조(주거복지사업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0. 고시원 및 쪽방 거주자를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사업</u></p> <p><u>11.</u> (현행 제10호와 같음)</p>

4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이정수

예산분석관 한기백

☎ 02-2180-7952

e-mail : hophan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- 쪽방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(제7조)

2. 세부추계내역

가. 총비용 ≙ 4,836,000천원(연평균 967,200천원)

$$= 312\text{동} \times 15,500\text{천원}$$

나. 쪽방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≙ 4,836,000천원

○ 쪽방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= $\sum_{i=1}^5$ (연간 쪽방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)_i

i = 비용추계 연차(2020년 ~ 2024년)

- 연간비용 = 967,200천원
- = 총비용 ÷ 5년
- = 4,836,000천원 ÷ 5년

- 설치 대상 쪽방 총 건물수(동) : 312동

구 별	쪽방 건물수(동)	쪽방수(개)	쪽방거주자(명)			기초생활수급자(명)	65세이상 홀몸노인(명)	장애인(명)
			계	남	녀			
합 계	312	3,829	2,907	2,518	389	1,725	972	254

자료: 서울시 복지정책실(2019.4.30.)

- 동당 지원 규모 추정

- 주택건축본부 제공 고시원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실적

구 분	합 계	2012	2013	2014	2015	2016	2017	2018
고시원수 (실수)	222 (8,979)	7 (267)	58 (2,316)	34 (1,445)	39 (1,581)	29 (1,189)	25 (982)	30 (1,199)
지원금액 (백만원)	3,444	110	785	470	577	538	406	554

- 평균 지원금액 = 15,500천원
- = 3,444,000천원 ÷ 222동